

제423회 임시회
' 25. 1. 22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 하고,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2조)
- 조례에 사용된 “위촉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변경함. 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1)에 따라 충청북도

1) 1)제20조(생활보장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·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

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,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(법제처)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2조**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한 것임.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을 보면, 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음.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자격은 △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△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△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으로 규정하고 있고,
 - 현재 「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자격을 보면, △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과 △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, △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·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·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·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등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음.
 - 즉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바,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4항	「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3항
④ 제1항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·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. <u>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</u> <u>2.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</u> <u>3.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</u>	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u>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</u> <u>2.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</u> <u>3.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</u> <u>4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대표자</u> <u>5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u> <u>6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</u> <u>7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<u>8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</u> <u>9.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

○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“위촉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변경하였고,

○ 안 제3조, 제7조, 제11조는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은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,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